

조선후기 시전의 노동력 고용과 工錢 · 雇價 지출 *

김 미 성 **

- 1. 머리말
- 2. 생산 · 가공과정의 수공업자와 工錢
 - 1) 시전과 수공업자의 관계구도 변화
 - 2) 기술별 工錢 책정과 상품값과의 비교
- 3. 운송 · 應役과정의 고용 노동자와 雇價
 - 1) 負持軍의 고용과 정률제 雇價
 - 2) 應役軍의 고용과 시전 내 노동조직
- 4. 맷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의 시전은 國役의 부담이 크고 그 반대급부인 특권도 컸다는 점에서 특권상인 또는 어용상인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시전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품의 수급 및 운송과정에서 민간(비정부) 생산 · 유통구조와의 연동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시전이 취급하는 왕실용 · 외교용 직물류, 종이류, 그릇류 등 특정 고품질의 물품은 전문 수공업자들에 의해서만 생산 · 가공될 수 있었으므로, 시전과 수공업자는 일정 부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방 또는 경강으로부터의 물자 조달과정이나 정부에의 進排-受價 과정에

* 이 논문은 201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

서는 시전과 운송노동자와의 관계가 불가피하였다.

기존의 조선후기사 연구를 통해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화되던¹⁾ 흐름과 요역이 물납화·금납화하던 추세가 밝혀졌다. 또한 농촌유리민의 발생과 고공으로의 전환²⁾ 요역에서의 고용노동 발생이³⁾ 논증되었다. 특히 서울 유입인구가 한강변에서 하역운수업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상황이나 방역청부업을 전업화한 공인계 사례도 연구된 바 있다.⁴⁾ 이와 같은 조선후기 수공업계의 민영화 추세와 운수노동계의 고용 확대 추세를 인정한다면, 조선후기 시전의 상품 수급 및 운송 구조는 수공업 및 노동 분야의 변화 속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시전 연구는 크게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선후기 상업발달상 속에서 시전의 성격과 변화상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이다.⁵⁾ 이때 시전은 ‘난전의 성행’ 또는 ‘사상의 성장’과 짹하여 논의되었고, 특권상인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이 조선후기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편이었다. 단, 이러한 연구시각을 지닌 연구자들도 시전 대 난전, 관상 대 사상의 이분법적 구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의 연구 경향은 조선후기 경제를 ‘국가재분배체제’로 바라보며, 시전의 성격을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 경향이다.⁶⁾ 연구자에 따라서

1) 宋贊植, 1997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研究』, 一潮閣.

2) 崔潤晤, 1990 「조선후기 「和雇」의 성격」『忠北史學』3; 崔潤晤, 1992 「18·19세기 농업고용노동의 전개와 발달」『한국사연구』77; 姜勝浩, 2012 「고용노동의 발전과 雇工制 시행론」『역사와 실학』48; 姜勝浩, 2014 「17~18세기 雇工과 雇主의 실태: 경상도 丹城縣 朝直대장에 나타난 모습을 중심으로」『역사와 교육』18.

3)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4) 金東哲, 1988 「18세기 坊役制의 변동과 馬契의 성립 및 都賈化 양상」『韓國文化研究』創刊號; 金東哲, 1995 「18세기 水契의 창설과 도고활동」『釜大史學』19; 高東煥, 1998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고동환,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5) 姜萬吉, 1973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出版部; 朴平植, 1999 『朝鮮前期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卞光錫, 2001 『朝鮮後期 市塵商人 研究』, 혜안; 고동환, 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6) 須川英德, 2010 「시전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문고 소장의 綿紬塵 문서를 중심으로」『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Owen Miller, 2007 “The Silk Merchants of Myonjuwo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o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는 시전을 순수한 상업기구로 보기 힘들며 ‘半官半民’의 성격을 떤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⁷⁾ 이는 시전의 대민거래를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여기고, 기존 연구사에서 ‘사상’으로 치장되던 상인들도 권력과의 결탁 구조 속에서 파악함으로써,⁸⁾ 조선후기 민간 차원에서의 상업발달 수준을 미약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전하는 자료가 대부분 정부측 입장을 보여주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는 자료적 한계를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⁹⁾ 자료의 편향성을 근거로, 시전의 대민거래가 전무했다고 쉽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며, 그동안의 연구성과에서 실증된 서울 상업발달상을 간단히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국역 부담자로서 시전의 기본 속성과 국가와 시전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면서도, 변화하는 조선후기 상공업구조 속에서 시전이 상품의 수급과 운송을 위해 관계를 맺었던 수공업자와 노동자에게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다시 말해, 시전이 국가와 맺었던 관계 이외에 맺었던 관계구도들에 본고의 초점을 두고, 특히 시전과 생산부문 및 노동부문의 관계성을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시전과 생산부문의 관계는, 상업자본의 생산부문 침투 양상에 주목했던 초기 연구에서¹⁰⁾ 사례로 분석된 이후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상업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 최근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비판

7) 須川英徳, 2010 위의 논문.

8) 須川英徳, 1994 『李朝商業政策史研究: 18·9世紀における公權力と商業』, 東京大學出版社.

9) 면주전 문서는 시전을 ‘半官半民’의 성격을 떤 비상업적 기구로 결론짓는 연구에서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면주전 문서에는 대부분 시전과 국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로 채워져 있고,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실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면주전 문서는 조합 중심부[都中]에서 남긴 기록이 대부분이며, 면주전 도중은 각 구성원을 대변하여 관청에 대한 진배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으므로, 면주전 문서에 실제 민간 거래실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자료적 특징 때문이다. 면주전 내 各房이라는 별도의 영업조직이 존재했음은 이미 논증된 바 있다(고동환, 2013 앞의 책).

10) 姜萬吉, 1973 앞의 책; 宋贊植, 1997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研究』, 一潮閣.

과 극복 의지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례 연구와 실증은 계속해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¹⁾ 물론 본고가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회귀하거나 이를 재인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적·결과론적 접근 방식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기존에 다루어졌던 사례들을 재검토하고 재설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전과 노동부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전의 기본 의무로서 국역이 설명되거나¹²⁾ 최근 면주전 문서의 분석을 통해 면주전의 국역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천착한 성과가 있었지만,¹³⁾ 국역 이외의 노동 분야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시전 특히 육의전 등의 대형 시전은 국가에 정기적으로 상납[進排]하는 물자만 해도 대규모였으므로, 시전이 물자의 운송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시전의 국역 수행과정에서도 실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시전이 그들에게 지불한 대가는 어떠하였는지, 시전과의 상호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¹⁴⁾

이에 본고는 조선후기 시전의 工錢·雇價 지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시전 자료의 검토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다만 현전하는 시전 자료는 면주전 문서,¹⁵⁾ 포전 문서,¹⁶⁾ 지전 문서¹⁷⁾ 등이 있는데, 특히 19세기 후반에 집중

11) 고동환, 2009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후기 상업 변동: 강만길『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 147.

12) 卞光錫, 2001 앞의 책.

13) 고동환, 2013 앞의 책, 제7장: Owen Miller, 2007 앞의 논문, Chapter Six.

14) Owen Miller, 2007 위의 논문은 면주전의 부역 노동 형식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천착한 연구이다. 면주전의 국역 수행에 대한 『行軍』과 『軍防守冊』, 『軍井間冊』, 『房會計冊』, 『제각전응군절목』 등의 직접적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19세기 후반 면주전 상인들의 부역 방식과 돈으로의 대납 방식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시전의 관계 및 정부 재정과 제도의 변화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시전과 노동자의 실질적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15) 京都大學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문서 중에는 방대한 분량의 면주전관계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須川英徳, 2003 「朝鮮時代の商人文書について：綿紬塵文書を中心に」『史料館研究紀要』 34, 國文學研究資料館史料館: 須川英徳, 2010 앞의 논문: Owen Miller, 2007 위의 논문: 고동환, 2013 앞의 책: 고

되어 있고 그 이전 시기의 시전 자료는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시전 자료들에 나타나는 工錢·雇價를 분석하더라도 그 이전 시기까지 단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설정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시전의 운영상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을 담고 있으므로 단절적으로 파악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각종 관찬자료와 시전 분쟁 기록에 담긴 시전상인, 수공업자, 노동자 등의 모습을 추적하며 고용노동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는 가운데, 19세기 후반 시전 자료의 분석 결과와 연결 짓고자 한다.

2. 생산·가공과정의 수공업자와 工錢

1) 시전과 수공업자의 관계구도 변화

조선시기 수공업자의 생산물 판매 조건 및 시전과 수공업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사의 설명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체제 아래에서는 官匠들이 관청에 입역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상품을 私造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⁸⁾ 이때 판매는 家前이나 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장인들은 시전 판매를 위해 시전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때까지 수공업자의 직접 판매행위는 소량이었기

동환, 2008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면주전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 32; 고동환, 2002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역사와 현실』 44; 김미성, 2017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유통구조」,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 16) 黑正巖, 1923 「ギルドとしての京城六矣廳」『經濟史論考』, 岩坡書店; 정승모·이영훈·조영준, 2016 「조선후기 서울 布廛이 남긴 기록의 조각들: '정승모 문서'의 소개와 분류」『古文書研究』 48; 조영준, 2016 「조선후기 서울 布廛의 인적 구성과 거래 실태: 삼례 구매 방식의 유형화를 중심으로」『서울학연구』 62.
- 17) 宋贊植, 1974 「三南方物紙貢考 (下)」『진단학보』 38(송찬식, 1997 앞의 책에 수록), 100-101면에서 근거자료로 제시된 『各項物目廳契』(규장각 古-4259-104)는 시전이 남긴 회계장부로 파악된다.
- 18) 宋贊植, 1997 앞의 책, 253면.
- 19) 최완기, 1998 「朝鮮時代 鐘路에서의 生產活動과 그 意味」『史學研究』 55·56, 311면.

때문에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官匠의 부역방식이 價布 납부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그들의 私造판매도 확대되었고, 官匠의 수가 급감하면서 私匠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특히 17세기에는 군인 수공업자들에게도 市牌가 발급되어 家前小市에서의 受持物 판매가 허용되었고, 그 판매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亂塵의 주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²⁰⁾

이와 같이 조선전기의 관영수공업이 점차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관련성은 초기 연구에서 '상업자본의 수공업자 지배'로 설명된 이후 논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상호관계를 천착한 선구적인 연구는 강만길이었다. 강만길은 조선후기 도고상업으로 인한 상업자본의 축적을 설명하였고, 이렇게 축적된 도고자본이 생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²¹⁾ 그 지배 방식은 상인자본에 의한 생산물의 매점, 생산 원료의 매점, 생산장의 직영 등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특히 시전상인의 경우 금난전권을 통해 생산물을 매점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송찬식은 조선후기 상업 경쟁이 격화되고 상업통제권이 쇠퇴함에 따라 상인들의 관심이 유통에서 생산 방면으로 전환되었고, 시전상인은 상품의 매입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수공업자를 지배하였다고 설명하였다.²²⁾ 이렇듯 시전상인의 생산지배를 상업통제권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 것은, 시전의 금난전권을 강조했던 강만길의 견해와 구별된다. 그러나 두 견해 모두 수공업자 스스로 자본가로 성장하는 경로가 아닌 상인자본가의 수공업자 지배 경로를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송찬식은 수공업자들에게는 資力이 없었음을 전제하고,²³⁾ 기술자(수공업자)가 아닌 자본가(상인)으로서의 商人物主에 주목하였으며, 수공업자는 '工錢만 받는 고용인의 처지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20) 白承哲, 2000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商業論·商業政策』, 혜안; 卞光錫, 2001 앞의 책.

21) 姜萬吉, 1973 앞의 책.

22) 宋贊植, 1997 앞의 책.

23) 위의 책, 300면.

그럼에도 송찬식은 생산자(수공업자) 출신 貢人の 존재와 ‘기업가’로서의 전환 사례도 언급한 바 있다.²⁴⁾ 하지만, 수공업자 스스로 ‘초기기업가’로 전환되었음을 본격적으로 주장한 연구자는 김영호였다. 김영호는 상인자본의 수공업자 지배 양상을 널리 인정하는 가운데, 특히 자영수공업장인 ‘店’과 ‘店主’의 출현을 주목하였다.²⁵⁾ 점주를 물주이자 기술전문가이며 동시에 상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며 이를 ‘초기기업가’로 명명하였다. 이때 점주로 전환된 수공업자는 工錢만 받는 처지가 아니라 직접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 평가되었다.

이상 1970년대에 이루어진 초기 연구들은, 상인과 수공업자가 자본가(또는 기업가)로 전환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상인자본의 수공업자 지배’라는 명제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한 연구로 여겨졌으며, 수공업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딘 상황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동환은 조선후기 상업 발달상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고동환은 17세기 최말기 시전의 금난 전권이 강화되었고,²⁶⁾ 18세기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분쟁에서도 ‘제조와 판매의 분리 원칙[匠卽造 商卽販]’ 아래 시전의 독점권이 인정받는 추세였다고 보았다.²⁷⁾ 또 시전의 금난전권과 판매권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수공업자들이 상인에게 종속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수공업자에 대해 시전상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근거를 시전의 금난전권 또는 판매독점권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업 통제권의 쇠퇴로 상인들의 생산부문 침투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송찬식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본고가 의문을 던지고 그 답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과연 조선후기 시전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는가?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분쟁에서 최종 승자는 과연 시전상인이었는가?

24) 위의 책, 301-302면.

25) 金泳鎬, 1972 「朝鮮後期 手工業의 發展과 新しい 經營形態」『대동문화연구』 9.

26) 고동환, 2013 앞의 책.

27) 고동환, 2009 앞의 논문, 374면.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가 주목한 것은 수공업자들의 시전·공인권 창설 사례이다. 수공업자의 시전 창설 사례는 17세기부터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조의 耳掩匠은 17세기에 직접 耳掩塵이라는 시전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귀마개를 판매하였다.²⁸⁾ 그러나 이때 이업장들에 의해 설립된 이업전은 처음부터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수공업자들의 시전·공계 창설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정부 역시 이를 공인해주는 입장이었다. 燻造契,²⁹⁾ 折草塵,³⁰⁾ 耳掩塵,³¹⁾ 刀子塵,³²⁾ 染契³³⁾ 등은 모두 수공업자들이 창설한 시전 또는 공인계 사례이다. 『貢弊』에서 공인의 일원으로 기입되어 있는 漆貢人, 毛衣匠, 月課匠, 紙匠, 花匠, 破桶匠, 斜笠涼冠匠³⁴⁾ 등도 수공업자로서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공인권을 획득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개의 床塵 중에서 1721년 혁파되었던 紙床塵을 1722년 周皮匠들이 새로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³⁵⁾

수공업자들의 판매활동이 본격화하고 그 판매량도 더 이상 소량에 그치지 않게 되자 시전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수공업자가 신설한 시전·공계와 본래의 시전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처음에는 본전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다. 제조와 판매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는 형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8세기 말 이후 시전의 금난전권이 약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나타난다.

일례로 治匠과 雜鐵塵의 분쟁 경과를 살펴볼 수 있다. 본래 야장은 잡철전으로부터 생산재료인 中房鐵을 받아 가공·생산한 후에 그 결과물을 잡철전에 납품하는 입장이었다.³⁶⁾ 그런데 1787년 무렵 야장들은, 지방의 鐵店에서 서울로 오

28) 『비변사등록』 숙종 4년 9월 27일.

29) 『승정원일기』 영조 7년 6월 9일: 영조 7년 7월 22일.

30)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5월 5일: 영조 5년 7월 12일: 영조 5년 6월 18일.

31) 『비변사등록』 정조 24년 1월 7일.

32)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7일.

33)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3월 12일: 숙종 21년 4월 14일.

34) 『貢弊』(1985 여강출판사 영인본).

35) 『승정원일기』 경종 1년 윤6월 19일.

36)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월 8일.

는 鐵商을 통해 중방철을 구입하여 별도의 장소에 저장해두고 이익을 취하려다가 잡철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야장들은 治爐 앞에 점포를 벌여 직접 생산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³⁷⁾ 이렇듯 생산원료 구매경로와 생산물 판매경로에서 모두 야장들이 잡철전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자 잡철전은 크게 반발하였고 소송이 벌어졌다.

이 소송에서 처음에는 야장이 연이어 패소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786년 야장은 잡철전으로부터 난전으로 단속되는 억울함을 한성부에 호소하였지만 패소하였고,³⁸⁾ 연이어 비변사·평시서·형조에 소송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³⁹⁾ 1786년과 1787년 야장들이 이 문제로 격쟁을 하였으나, 그 두목들이 모두 처벌당하기만 했다.⁴⁰⁾

그러나 1787년 9월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때에는 鄭大云을 대표로 하는 야장들이 다시 격쟁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처결이 달라진 것이다. 그동안 야장들이 격쟁 때 말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장들이 중방철에 대해 가진 취급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호소이다. 국역 수행의 중대함, 야장들의 생계 문제, 그동안의 관행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잡철전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야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잡철전은 1732년~1733년쯤에 破鐵壘으로 창설하였다가 몰래 雜鐵壘으로 개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방철이란 물종은 잡철전 사람들이 평시서 市案에 나중에 몰래 끼워넣어 적은[挾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9월 정대운의 격쟁 때 처결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잡철전의 부정행위, 특히 시안을 조작한 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었다.⁴²⁾ 형조는 야장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정조 역시 잡철전의 부정을 처벌할 것을 명하였다.⁴³⁾ 이로써 중방철은

37)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1월 25일.

38)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7일.

39)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1월 25일.

40)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11월 7일; 정조 10년 11월 9일; 정조 11년 3월 10일.

41)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3월 10일; 정조 11년 9월 8일.

42)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9월 8일. 이때 형조에서 평시서 시안을 확인해 보니 잡철전의 소관 물종에 중방철이 인준절차 없이 다른 필체로 추가된 흔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야장들의 소관 물종이 되었다. 이때의 결정은 ‘善政’으로 평가되었고,⁴⁴⁾ 19세기 잡철전의 호소가 계속될 때에도 ‘정미년(1787)의 判付’로 거론되며 절엄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⁴⁵⁾

이후 야장들의 직접 판매행위는 노골화되었다. 야장은 이전에 薦鐵臺을 창설하였다가 과한 적이 있었는데, 1788년 9월 그 신철전을 복설하기를 청원하였다.⁴⁶⁾ 그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 무렵 야장들이 이미 雜鐵新臺을 차려 판매행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⁴⁷⁾ 또 야장들이冶爐 앞에 가게를 벌려 판매하는 행위는 꾸준히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⁴⁸⁾ 19세기 초까지 계속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⁴⁹⁾

19세기 야장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공인계로서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7년 야장의 승소 결정 이후 잡철전은 이미 야장을 ‘中房鐵主人’이라고 지칭하였다.⁵⁰⁾ 1810년 야장들은 자신들이 진배하는 正鐵의 欲을 잡철전이나 鐵契의 예에 준하여 상향책정해주기를 요구하였다.⁵¹⁾ 그러나 1850년 무렵부터는 잡철전과 貿鐵契貢人과 함께 匠人鐵契貢人이 공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⁵²⁾

이와 같이 수공업자가 기존 시장과의 분쟁에서 이긴 경우는 18세기 후반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상의원 醫匠과 床臺은 1788년 무렵 醫帽와 容巾 등의 물종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다. 처음에는 형조에서도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하고⁵³⁾ 통공발매하도록 조처하였으나,⁵⁴⁾ 결국에는 총장의 승소로 결정이 났던

43)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9월 8일: 정조 11년 9월 9일.

44)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9월 10일.

45) 『비변사등록』 순조 3년 윤2월 12일: 순조 7년 1월 23일.

46)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9월 30일.

47)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1월 25일.

48) 『비변사등록』 정조 14년 2월 15일: 정조 15년 1월 7일.

49) 『비변사등록』 순조 4년 4월 1일: 순조 7년 1월 23일.

50)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11월 25일.

51) 『비변사등록』 순조 10년 1월 10일.

52) 『비변사등록』 철종 3년 1월 25일: 철종 5년 4월 2일: 철종 6년 6월 9일: 철종 7년 1월 24일: 철종 8년 1월 23일.

53)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8월 18일.

것으로 확인된다.⁵⁵⁾ 이후 상전의 말에 따르면, 1791년 무렵 총장은 상전 사람을 난전으로 몰아 단속하기에 이르렀고, 총장 스스로 만든 제품 이외에 지방에서 들어온 총모와 탕건까지도 독점하고자 하였다고 한다.⁵⁶⁾ 이때에도 정부에서는 총장의 승소 선고를 재확인해 주었다.

상전은 공조 毛衣匠의 도전도 받았다. 상전과 모의장은 둘 다 휘양[揮項]이라는 물종을 함께 취급하고 있었는데, 다만 1802년에 모의장은 새것을 팔고 상전은 헌것만 팔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고 한다. 모의장은 당초 耳掩臺을 운영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1788년 무렵 立臺으로부터 난전으로 단속 당하고 望門床臺으로부터 分文을 징수 당하는 등의 곤란함을 겪고 결국 이업전도 없어지기에 이르렀다.⁵⁷⁾ 그러나 1824년 무렵에는 오히려 모의장이 상전을 난전으로 몰기에 이르렀다. 상전상인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비변사에서는 “모장이 주이고 상전이 객인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며 상전의 호소를 謐訴로 평가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이후 총장과 모의장은 상전과의 소송에서 이기고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송에서 쟁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경쟁에서 시전을 능가하게 된 수공업자 사례도 발견된다. 상의원의 도자장들은 수십 년간 가게를 벌여 장사를 하다가 1788년 무렵 도자전에 入參하기에 이르렀는데 입참 후 1~2년이 지나면서 ‘객이 도리어 주인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⁵⁹⁾ 도자전은 이를 두고 도자장이 시전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하며 소송을 벌였다.⁶⁰⁾ 이때의 소송에서 도자장은 쟁고, 24명의 도자장 중 절반은 도자전으로 도로 들어가고 新臺과 舊臺이 함께 판매하라는 비변사의 처결이 내려졌다.⁶¹⁾ 그러나 도자장들은 이러한 처결을 무시

54)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11월 20일.

55)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7일.

56)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7일.

57) 『비변사등록』 정조 24년 1월 7일.

58) 『비변사등록』 순조 24년 2월 1일.

59) 『비변사등록』 정조 14년 2월 22일.

60)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7일.

61) 『비변사등록』 정조 14년 2월 22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끌어들여 시전 하나를 따로 만들었고, 이에 도자전의 상권은 위협 받게 되었다고 한다.⁶²⁾

이상과 같이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의 분쟁에서 시전이 지닌 금난전권이 우위를 점하였으나, 18세기 말부터는 수공업자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는 수공업자가 만든 시전이나 공인조직이 본전에 우위를 점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물론 위의 사례들만으로 18세기 후반 모든 수공업자들이 시전의 경쟁상대로 성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사례들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18세기 말 이러한 형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신해통공이 시행되고 금난전권이 형해화되었던 추세와⁶³⁾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 ‘상업자본’에 초점을 두고 당위적으로 ‘수공업자 지배’를 논증하던 과정에서는, 이러한 18세기 말 이후 시전과 수공업자의 형세 역전 사례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수공업자의 시전·공인권 창설 사례가 언급된 바 있었지만, 이 역시 ‘기업가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로만 거론되면서, 시전상인과의 분쟁 경과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시전에 대한 수공업자의 종속성을 조선후기에 비로소 나타난 주요한 변화상으로 부각함에 따라, 조선전기 수공업자들의 지위가 조선후기에 비해 더욱 더 종속적이었다는 점이 간과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상업자본이 아닌 수공업자의 입장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수공업자가 시전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독립적 관계-경쟁적 관계로 변화하는 추세도 분명 존재하였다.

2) 기술별 工錢 책정과 상품값과의 비교

수공업자들이 생산활동에 대해 받는 대가도 질적·양적으로 변화하였다.

첫째, 수공업자의 생산활동이 하나의 身役으로 여겨지던 조선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官匠들이 私匠化하여 생산물에 대한 工錢을 받게 되었다. 관청에 입역하는 장인들이 받았던 匠布나 剥料 등은⁶⁴⁾ ‘역에 대한 대가’ 즉 ‘역가’의 개념이었

62)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1월 7일.

63) 고동환, 2013 앞의 책, 320면.

다. 역가는 사람을 단위로 하여 지급되는 수당 개념이었다. 이는 관장이 각 관청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매어 있었던 처지였으므로 자연스러운 대가 지불 방식이었다. 반면 공전은 생산물의 수량 단위로 지급되는 노동대가였다. 수공업자가 공전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그 수공업자가 인신적으로는 자유롭고 다만 생산물의 양과 질에 따라 생산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해, ‘역가’에서 ‘공전’으로의 전환은 관장의 사장화, 수공업자의 인신적 구속성 완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현상이다.

둘째, 18세기 후반 수공업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공전이 비숙련 잡역부 募軍의雇價 수준을 역전하기에 이르렀다. 조선후기 각종 토목공사에 고용되었던 募軍과 匠人們의 雇價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중엽까지는 비숙련 잡역부인 모군들이 수공업 기술자인 장인에 비해 많은 고가를 받고 있었다. 이는 장인들이 고용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부에의 강한 인신적 예속관계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⁶⁵⁾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고가의 액수에서 모군과 장인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되었다.⁶⁶⁾ 당시 『대전통편』에서 외공장의 경우 모든 사역은 私工을 고용한다고 법제화될 만큼 장인들의 인신적 예속관계가 완화되면서, 수공업 장인들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공업자에게 지불되는 공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후반까지는 工錢이 구체적인 단가로 책정되기보다는 총액 단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695년 염계는 貢價의 부족을 호소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값을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세폐 12동 값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청원하였다.⁶⁷⁾ 이때 염계는 염색 수공업자 개개인에게 각각의 값을 배분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貢價는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64)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송찬식, 1997 앞의 책, 321-324면을 참고.

65) 윤용출, 1998 앞의 책, 294면.

66) 위의 책, 296면 〈표 7〉 참고.

67) 『비변사등록』 숙종 21년 4월 14일.

이러한 총액단위의 공가 책정방식은 18세기에 들어 단가 기준의 책정방식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753년 『貢弊』에 기록된 염계공인과 제용감 도련 주인의 호소내용에는 각각 공가로서 받는 染價와 捣鍊價의 액수가 세부 품목별 단가로 나타난다. 다음 <표 1>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공 대상이 직물일 경우에는 1필을 단위로 색상별 공전이 책정되어 있었고, 가공 대상이 종이일 경우에는 1권을 단위로 색상별·품목별 공전이 책정되어 있었다. 도련가도 1753년 당시 “도련가를 작성한 것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번 驁正한 상태였다고 한다.⁶⁸⁾ 1795년에 열린 혜경궁의 회갑연 기록인 『園幸乙卯整理儀軌』에서도 靑木과 紅木의 1필당 染價 및 捣鍊價가 정해져 있었다. 靑木의 경우 1필당 0.6냥 씩이었고, 紅木의 경우 1필당 1.5냥씩이었다.⁶⁹⁾

<표 1> 1753년 『貢弊』에서 언급된 入染價, 捣鍊價와 市直

			貢價 米	市直 錢	비고
염계	入染價	紅紗, 紅紬	1필	2두 9승	2.00냥 入染價 + 膠米 + 捣鍊手工
		紅木, 紅布, 紅苧布	1필	2두 8승	1.80냥
		鴉青木布	1필	3두 2승	2.50냥
		紅搗鍊紙	1권	5두 2승	7.00냥
		鴉青上品搗鍊紙	1권	6두 8승	6.00냥
		鴉青草注紙	1권	2두 4승	5.00냥
		紅白綿紙	1권	1두 4승	2.00냥
		青白綿紙	1권	1두 4승	1.50냥
도련주인	搗鍊價	綿紬	1필	膠米 4승	여름 0.25냥 겨울 0.30냥

<표 1>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각각의 貢價 工錢에 대응하여 각각의 市

68) 『貢弊』 권2, 「濟用監 搗鍊主人」(1985 여강출판사 영인본, 189면) “搗鍊價酌定已久, 其間累經釐正, 而尙不得變通, 則必有委折.”

69) 『園幸乙卯整理儀軌』 권4, 器用 都廳措備.

直 즉 시가도 기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물종별 염색 貢價의 높고 낮음은 市直 염가의 높낮이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紅木·紅布·紅苧布와 鴉青草注紙의 경우 貢價는 2두 4~8승 정도로 비슷한데, 時直는 각각 1.8냥과 5냥으로 액수 차이가 꽤 크다. 이는 시중에서는 아침초주지를 염색 할 때 더 비싼 대가를 받는데 공가를 받을 때는 그만큼의 값을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뜻한다. 이에 염계공인이 貢價의 부족을 호소하자 비변사는 당대의 市直에 견주어 공가를 조정하라고 하였다.⁷⁰⁾ 이는 공전이 貢價로서만 책정된 것이 아니었고, 시중에서도 각각의 공전이 일정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물의 포백 공정에서의 工錢도 성북동 포백훈조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05년에 마련된 『城北洞曝白燭造契完文節目』에 따르면, 이 계는 도성 시전이나 송도의 상인으로부터 무명[木], 베[布], 모시[苧] 등을 받아와 포백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이들은 曝白工錢의 명목으로 雇價를 받았는데, 1同(=50疋)마다 무명은 4냥, 베는 6.5냥, 모시는 10냥씩으로 정액화되어 있었다.⁷¹⁾

직물류 가공 이외의 분야에서도 공전의 책정 단가가 확인된다. 각 관청의 지출 장부나 대규모 역사의 진행과정을 기록한 의궤류나 등록류에서 각종 공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일례로 1805년 『健陵改修膳錄』에서 공전 지불 내역만 추출하자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曝白, 洗淨, 還洗淨, 改洗淨, 改縫造, 改帶, 改鍊 등의 공정 내용마다 공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었고, 같은 공정이더라도 가공 대상이 되는 품목이 다르면 공전의 단가도 다르게 책정되었다. 똑같이 改鍊 즉 고쳐 단련시키는 공정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 대상이 加乃[加乃], 光伊[光伊], 平鐘[平鐘], 낫[鎌子], 삭도[削刀] 중 무엇이냐에 따라 그 공전 단가가 달랐다.

70) 『貢弊』 권5, 「染契人」(1985 여강출판사 영인본, 405면).

71) 『城北洞曝白燭造契完文節目』(한양도성박물관, 2014 『도성과 마을 1』, 38-39면) “木布苧
曝白工錢, 木每同雇價四兩, 布每同雇價六兩五錢, 苧每同雇價十兩式, 並依廟堂決給例, 捧
上爲乎矣, 無敢違越爲白齊.”

〈표 2〉『健陵改修膳錄』「水原府進排雜物價及匠募雇價所入成冊」중 工錢 기록

	가공대상	단위	工錢 단가	기록된 위치
曝白工錢	甲揮帳	浮	0.20냥	정묘년(1807) 수원부 7번째 항목
		浮	0.10냥	정묘년(1807) 수원부 7번째 항목
洗淨工錢	甲揮帳	浮	0.16냥	을축년(1805) 수원부 1번째 항목
還洗淨工錢	甲揮帳	浮	0.12냥	을축년(1805) 수원부 72번째 항목
改洗淨工錢	甲揮帳	浮	0.20냥	정묘년(1807) 수원부 115번째 항목
改縫造工錢	甲揮帳	浮	0.50냥	을축년(1805) 수원부 69번째 항목
	甲揮帳	浮	1.00냥	정묘년(1807) 수원부 116번째 항목
改帶工錢	擔桶	坐	0.30냥	을축년(1805) 수원부 44번째 항목
		坐	0.30냥	을축년(1805) 수원부 60번째 항목
		坐	0.25냥	정묘년(1807) 수원부 56번째 항목
		坐	0.30냥	정묘년(1807) 수원부 97번째 항목
	小桶	坐	0.25냥	을축년(1805) 수원부 60번째 항목
		坐	0.20냥	정묘년(1807) 수원부 59번째 항목
改鍊工錢	加乃	柄	0.04냥	정묘년(1807) 수원부 53번째 항목
	廣光伊	柄	0.05냥	
	平鍾	柄	0.04냥	
	鎌子	箇	0.02냥	
	削刀	柄	0.03냥	
添鋒改鍊工錢	臺串釘	箇	0.03냥	정묘년(1807) 수원부 55번째 항목

한편, 여기서 또 주목되는 점은 같은 품목의 같은 공전인 데도 지출된 연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보이며, 심지어 같은 때에 공정을 하였는데도 사람마다 공전 액수가 다르게 지불된 경우도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휘장을 고쳐 縫造할 때의 공전은 1805년에는 1浮당 0.5냥이 지불되었으나 1807년에는 1냥으로 바뀌었고, 담통의 끈을 고칠 때의 공전은 1坐당 0.3냥인 경우가 많았으나 0.25냥으로 지급된 적이 있었으며, 소통의 경우도 시기에 따라 0.25냥 또는 0.2냥으로 다르게 지불되었다. 1807년 갑휘장 45부를 포백하였을 때는 25부에 대한 공전은 0.2냥씩, 나머지 20부에 대한 공전은 0.1냥씩 차등 지출하기도 했다.⁷²⁾

그 이유를 추정컨대, 시기에 따른 시가 차이를 반영했을 가능성과 공정을 행한 수공업자들 간의 기술력 차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불수단의 변화도 보인다. 1753년 『貢幣』에서는 <표 1>에서 보듯이 貢價는 쌀로 책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 市直는 이미 동전으로 계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전의 지불 수단도 현물이 아닌 화폐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1795년의 『園幸乙卯整理儀軌』나 1805년의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과 『健陵改修膳錄』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전은 모두 동전으로 지불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19세기의 기록에서는 각 공정별 공전이 단가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공 수량별 단가는 일종의 성과급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인계가 받은 공가, 국가적 역사에 고용된 장인이 받는 공전, 그리고 민간 거래에서의 공전까지 모두 일정한 책정 기준을 지니고 있었다. 품목별, 기술별 단가를 각각 다르게 책정한 것은 해당 공정에 들어간 기술력과 노동력을 헤아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 의도를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정부 차원에서 지불된 공전의 추이를 보여주었다. 시전 역시 정부에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는 입장이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불 수단 변화는 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貢價로서 책정한 공전의 단가와 공인이나 시전이 수공업자에게 지불한 공전의 액수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인에게 지급하는 貢價는 설사 그 책정과정에서는 각각의 단가로 계산되었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때는 총액 단위로 해당 공인조직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⁷³⁾ 이러한 사정은 시전도 마찬가지였다. 다소 시기를 달리하는 자료이지

72) 『健陵改修膳錄』 丁卯年 水原府進排雜物價及匠募雇價犒饋物力所入成冊 “錢七兩, 甲揮帳四十五浮, 曝白工錢【二十五浮, 每浮二錢式, 二十浮, 每浮一錢式】”

73) 『만기요람』 재용편 3 「호조공물」조에서는 각 공인별 1년치 공가를 정리하고 있으며, 元貢의 경우 1년치 공가를 “2월과 8월로 等을 나누어 지급”하였고(『만기요람』 재용편 3 호조공물 원공가), 별무의 경우 “魚鱗을 만들고 等을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였다(『만기요람』 재용편 3 호조공물 별무). 각각의 공인들은 정부로부터 공가를 총액으로 지불 받아 이를 수공업 노동자들 각각에게 배분하고 “그 잉여로써 밑천삼아 살며[資生] 應役”하였다(『비변사등록』 숙종 21년 4월 14일).

만, 19세기 후반 면주전 자료를 통해 시전이 정부로부터 受價하는 방식과 그 수가액을 각처 용도로 분배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⁷⁴⁾

특히 『吐紳受價冊』과 『水紳受價冊』에는 각각 진배한 토주와 수주에 대한 수가와 별도로 染受價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염수가는 芝草, 黃灰木, 燒木, 紅花, 五昧子, 玄木 등 각종 염료나 돈으로 이루어졌다. 자색, 홍색, 흑색 등에 대한 염수가는 대체로 염료로 지급되었고, 초록색, 남색 등에 대한 염수가는 대체로 동전으로 지급되었다. 각 『受價冊』에서는 염료로 값을 받은 경우 이를 代錢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종 作錢한 금액을 처리한 내역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는데, 대체로 “本契에 上下”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본契라 함은 『吐紳受價冊』의 경우 토주계를, 『水紳受價冊』의 경우 수주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본계에 합계 금액을 보내기 이전에 長房告祀, 考出南草, 負持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제하고 보낸 경우도 있었다.⁷⁵⁾ 일부 염료는 代錢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구성원들에게 分兒하는 경우도 있었고,⁷⁶⁾ 일부 토주계나 수주계에 교차 이송한 경우도 있었다.⁷⁷⁾ 즉, 면주전은 정부로부터 염색 명목으로 受價한 액수를 그대로 해당 토주계나 수주계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먼저 구성원에게 배분하거나 각종 부대비용으로 지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전달하였다.

면주전 대방 산하의 진배 조직이었던 토주계, 수주계 또한 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염수가를 받은 그대로 수공업자들에게 지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吐紳契會計冊』과 『水紳契會計冊』에서는 금전의 출납과 관련하여 捧上秩과

74) 면주전은 그 진배물종별로 『水紳受價冊』, 『吐紳受價冊』, 『上紳受價冊』, 『進獻受價冊』, 『歲幣受價賸錄』, 『淸人禮單受價冊』, 『倭人禮單受價冊』 등의 장부를 작성하였다. 각 『수가책』에는 각 진배 물종에 대한 수가액과 그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75) 『水紳受價冊』丙寅 6월.

76) 『吐紳受價冊』에서는 자직토주에 대한 染受價로 받은 燒木은 모두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分兒하고 있다.

77) 『水紳受價冊』에서는 자직수주에 대한 染受價로 받은 芝草를 토주계에 移送한다는 기록들이 발견되며, 『吐紳受價冊』에서도 수주계로부터 移來한 芝草나 黃灰木 등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用下秩을 정리하고 있는데 봉상질에 나타나는 염수가 수입 내역과 용하질에 나타나는 염공전 지출 내역은 시기적으로나 액수면에서 모두 일치 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⁸⁾

이와 같이 정부측에서 책정한 공전은 총액 단위로 담당 공인이나 시전에게 지불되었고, 공인과 시전이 이를 다시 실제의 수공업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실제로 수공업 노동자들이 전달 받게 되는 공전의 실수령액은 정부측에서 책정한 정액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면주전 자료에서 동일한 명목의 수가액과 공전 지출 내역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는 것은 염색 분야이다. 면주전이 정부로부터 받는 염수가의 액수는 『瞻錄』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受價籌板』은 각 진배물종별 수가액을 作錢, 作米, 作木할 때 필요한 환산법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토주와 수주에 대한 염수가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⁷⁹⁾ <표 3>는 『등록』과 『수가주판』에 기재된 염수가를 함께 정리한 것이다.⁸⁰⁾

그러나 수주계와 토주계 차원에서 지출된 염공전의 액수는 이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⁸¹⁾ <표 3>에서 보듯이, 면주전이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규정된 염수가의 액수에 비해 면주전 산하 수주계와 토주계에서 지출된 염공전의 액수는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홍토주의 염공전은 염수가액의 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낙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하는 남토주의 경우에도 염공전은 염수가액의 59%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 면주전 대방 - 면주전 산하 수주계 · 토주계의 중층적 구조를 거치면서 지불된 염공전은 애초의 염수가액보다 하향책정되었다.

78)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261-262면 참고.

79) 『受價籌板』(河合文庫).

80) 실제로 염수가한 내역이 기록된 『水紳受價冊』과 『吐紳受價冊』을 살펴보면, 실제의 수가액도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1) 『水紳契會計冊』(河合文庫) 用下秩: 『吐紳契會計冊』(河合文庫) 用下秩.

〈표 3〉 면주전 자료에 나타나는 染受價와 染工錢의 비교

		『受價籌板』 기준 1필당 染受價			『贍錄』 기준 1필당 染受價			『토주계회계책』 『수주계회계책』 에서 지출된 1필당 염공전
		지불 수단	액수	錢으로 환산한 값	지불 수단	액수	錢으로 환산한 값	
수 주	大紅水紬	紅花	6斤3兩4錢	18.21냥	紅花	6斤3兩4錢	19.30냥	2.00냥
		五味子	5斤6兩8錢		島梅	5斤6兩		
	紫芝水紬	芝草	4斤8兩	1.13냥				
		黃灰木	4丹半					
	草綠水紬	價錢	1.50냥	1.50냥	文	1.50냥	1.50냥	0.70냥
	藍水紬	價錢	1.20냥	1.20냥	文	1.20냥	1.20냥	0.50냥
	玉色水紬	價錢	0.30냥	0.30냥				
	黃水紬	玄木	25尺	1.43냥				0.45냥
	鴉青水紬	玄木	1疋	2.00냥				
	黑水紬	玄木	1疋	2.00냥				
토 주	大紅吐紬	紅花	9斤	26.53냥	紅花	9斤	28.24냥	1.50냥
		五味子	8斤		島梅	8斤		
	紫的吐紬	芝草	6斤6兩8錢	1.61냥	芝草	6斤6兩8錢	1.61냥	4.00냥
		黃灰木	6丹		黃灰木	6丹		
		燒木	1丹半		燒木	1丹半		
		助役布	7尺5寸					
		草綠吐紬	價錢	2.14냥	2.14냥	2.14냥	2.14냥	
	藍吐紬	價錢	1.70냥	1.70냥		1.70냥	1.70냥	1.00냥
	玉色吐紬	價錢	0.45냥	0.45냥				
	黑吐紬	玄木	2疋30尺	5.71냥	玄木	2疋30尺	5.71냥	
	黃吐紬	玄木	1疋	2.00냥	槐花	2斤	2.00냥	
	鴉青吐紬				玄木	2疋30尺	5.71냥	

* 현물로 受價한 액수를 錢으로 환산할 때에는 해당 자료에 기재된 환산법에 따르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해당 자료에 기재된 환산 결과 액수를 통해 그 환산 비율을 추산하였다. 각각의 환산 비율은 다음과 같다.

紅花 1斤 = 下地木 1疋 = 錢 2兩

五味子 1斤 = 米 4斗

米 1石 = 木 2疋 = 錢 4兩

芝草 1斤 = 錢 0.25兩

黃灰木 1同 = 錢 0.07兩

島梅 1斤 = 米 4斗8升

槐花 1斤 = 下地木 17尺5寸

** 각종 현물의 액수를 세는 무게, 부피, 길이 등의 단위는 특정 품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자료에 나오는 값들을 추산해 본 결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紅花, 五味子, 芝草, 島梅, 槐花 : 1斤 = 16兩 = 160錢 = 1,600分 = 16,000里

米 : 1石 = 15斗 = 150升 = 1,500升 = 15,000작

黃灰木, 燒木 : 1同 = 6丹

下地木, 玄木 : 1同 = 50疋, 1疋 = 35尺 = 350寸 = 700分

이러한 낙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면주전이 염색 수공업자에게 염료 등의 가공 재료를 제공하고 그 염색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만 염공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전이 이윤을 남겼을 가능성이다. 면주전은 정부로부터 受價한 후 그것을 그대로 수공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전을 재책정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전의 이윤 창출 가능성은 면주전 내 명주값 책정기준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면주전 내부에서 지출된 명주값 역시 정부로부터의 受價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이윤을 걷어낸 가운데 하향 책정되었다.⁸²⁾ 『進獻受價冊』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면주전 진현 면주를 진배하면 정부로부터 1필당 下地木 8필씩 受價하였고 이를 代錢하면 16냥 정도였다.⁸³⁾ 면주전 대방은 이 수가액을 몇몇 용처에 분배하였는데, 그중 진배한 진현 면주에 대한 本色價는 1필당 9.5냥으로 책정하였다. 즉 진현용 면주 1필의 값은 정부 차원에서는 16냥, 면주전 대방 차원에서는 9.5냥으로 책정하여 지불한 것이다.

면주전에서 책정한 명주값과 직조 수공업자에게 지불된 工錢 사이에는 훨씬 더 큰 낙차가 있었다. 면주전은 매년 청에 가는 사행이 있을 때 진현용 면주를 紗匠에게 직조하게 하였다. 이때 紗匠에게 직조의 대가로 1필당 工錢 2냥씩을 지급한다고 하였다.⁸⁴⁾ 紗匠이 받았던 工錢을 명주값과 비교해보면, 면주전에서 책정한 9.5냥과 비교해도 20% 수준이었다. 나머지 80% 부분에는 물론 직조 원료인 견사를 무역해 오는 비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당시 직조장에게 제공된 견사의 구입비용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면주전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면주전이 직조 수공업자에게 지불한 공전의 액수가 명주값의 20% 수준이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82)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55면 〈표 IV-6〉 참고.

83) 정부로부터의 受價는 일차적으로 下地木으로 책정되었지만, 그 중 일부는 代錢하고, 일부는 代米 또는 代布하고, 일부는 發賣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作錢하는 과정을 거쳤다. 1865년 경 진현 면주 受價의 최종 作錢 액수는 15.18~15.25냥 정도였다.

84) 『瞻錄』(河合文庫) 「進香使禮物戶曹郎廳看品時人情」 “進獻綿紬，元非常產，而每年節行時，使次知付添貿絲，及使紗匠給價織造爲乎矣。每匹工錢二兩式，每匹重七八兩，廣七寸，許長四十三尺爲限，鍊精以待官分付納上事。”

만약 기준의 연구시각을 그대로 따를다면, 수공업자가 면주전이 책정한 공전을 받는 처지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공전의 액수가 정부 책정값과 상품값에 비해 훨씬 적었다는 점은 시전에 대한 수공업자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⁸⁵⁾ 그러나 수공업자가 종전에役의 형태로 생산활동을 하거나役價 개념으로 대가를 지불받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기술별·물량별 공전이 각각의 책정 기준에 따라 지불되었던 상황은 수공업자 입장에서는 호전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면주전의 경우 염색 분야에서는 염계공인과, 도련분야에서는 도련주인 또는 도련계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분담 또는 하청하고 있었다.⁸⁶⁾ 이때 염계는 면주전에만 종속된 수공업자 집단이 아니었다. 즉 시전이 수공업자에게 공전을 주고 생산과정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 상호관계가 반드시 지배-종속관계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공업자의 생산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는 18세기부터 품목별, 기술별 단가로 책정되었다. 한편, 정부측에서 시전·공인에게 지불하도록 책정한 貢價 속의 工錢 단가와 시전 차원에서 수공업자에게 지불한 工錢 단가는 서로 달랐다. 工錢의 액수만으로는 시전과 수공업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다만 수공업자의 생산 대가가 工錢으로서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시전이 수공업자를 고용하거나 관련 공인계에 하청하면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기준에 따라 工錢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운송·應役과정의 고용 노동자와 雇價

1) 負持軍의 고용과 정률제 雇價

조선후기에는 수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비기술(비숙련) 노동력 분야에서

85) 송찬식, 1997 앞의 책, 296면과 304면에서는 '상업자본의 수공업 지배'를 설명하면서 "차츰 紙匠은 工錢만 받는 처지로 변하고 紙塵商人은 顧客 이상의 雇主로서 역할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86)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212-222면.

도 고용노동이 발생·확산되었다. 17세기 요역제를 대신하여 모립제가 성립되었고, 산릉역·영건역·축성역 등 각종 토목공사에 募軍이 고용되기 시작하였다.⁸⁷⁾ 18세기에는 도성의 坊民에게 부과되던 坊役도 고립화·공물화되며 관련 공인계들이 성립되었다.⁸⁸⁾ 그 가운데 물자의 운송과 관련된 役들도 운송수단별 또는 운송대상별로 공물화되었다. 馬契, 貴馬契, 車契, 運負契, 氷契 등이 그 예이다.⁸⁹⁾

별도의 운송수단이나 운송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인력으로 짐을 옮기는 負持軍役도 공물화하였다. 본래 연초전에 南草를 썰어서 납품하던 ‘折草人’들이⁹⁰⁾ 1729년(영조 5) 무렵에 부지군역을 자신들이 전담하겠다고 자원하여 별도의 절초전을 설립하였다. 부지군역은 도성민의 방역 중에서도 가장 고된 역에 속한다고 인식되는 것이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허용하였다.⁹¹⁾ 절초전은 부지군역을 전담하는 대가로 창설된 시전이었으므로 절초전은 ‘負持軍折草者’나 ‘負持軍新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⁹²⁾

한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군이 집단화하였던 경향도 확인된다. 1851년에 일어난 뚝섬폭동에 대한 심문 기록을 보면 폭동을 일으킨 뚝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부지군’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⁹³⁾ 이 폭동은 같은 동내에 사는 고덕철이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포도청 기찰포교에 잡혀갔다고 하여 수백 명의 뚝섬 백성들이 그를 구해내겠다고 벌인 일이었다. 뚝섬이라는 지역적 공간은 이미 ‘부지군’이라는 직업군과 결합되어 조직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정 상인집단과 연계된 짐꾼조직의 사례도 발견된다. 경모궁 앞 여객주인과 결합된 卜房의 사례가 그것이다. 1782년 경모궁 궁저민들의 생계 안정책의 일환으로 경모궁 앞에는 6대 旅客이 설치되었는데, 이때 卜房도 함께 설치되었다고 한다.⁹⁴⁾ 복방은 동북쪽 지방 상인들이 경모궁 여객에 생선을 풀어놓으면 이를

87) 윤용출, 1998 앞의 책.

88) 金東哲, 1988 앞의 논문.

89) 高東煥, 1998 앞의 책: 고동환, 2007 앞의 책.

90) 『비변사등록』 영조 5년 7월 12일.

91) 『비변사등록』 영조 5년 6월 18일.

92) 『승정원일기』 숙종 38년 5월 5일.

93) 『右捕盜廳贍錄』 6책, 신혜 2월 羣島民擾 捕校毆打.

94) 『各塵記事』 亂塵事 丙午 正月 「景慕宮卜房申萬福等邀卜於門故處治事」(『韓國商業史資料

운반하고서 払價를 받는 조직이었다. 즉 복방은 여객주인의 하청 짐꾼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방 사람들은 성문을 지키고 서서 매 駄에 5葉씩 거두며 私旅客의 폐단을 일으켰고, 그 영향력을 東大門과 水口門(光熙門)을 경유하는 양주·광주 상인에게까지 넓혀 내외어물전의 원성을 샀다.⁹⁵⁾

이와 같이 18~19세기 부지군은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업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負持雇價 즉 부지군에게 지불되는 고가도 일정하게 책정되기 시작하였다.

1710년(숙종 36) 경에는 부지군이 하루 立役할 때 綿布 2尺 정도를 주었다.⁹⁶⁾ 그리고 병조에서 부지군의 價木 명목으로 내려주던 총액수는 4~5同였다고 한다. 해당 액수는 1729년 절초전이 방민들의 부지군역을 대신하면서 貢價로서 지불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⁹⁷⁾ 이처럼 18세기 초 부지군의 고가는 무명 [木]으로 일당 지급되고 있었다. 1753년 무렵에는 부지군의 일당이 동전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53년 7월 月令監察의 거처[依幕]와 자리[鋪陳]의 마련과 관련된 절목과 별단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의막 부지군과 잡물왕래 부지군의 고가가 모두 1인당 0.3냥으로 정해져 있었다.⁹⁸⁾

한편, 19세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지군 고가들은 일당으로 책정되기보다는 운반 물량이나 운반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4〉는 1805년 『健陵改修賸錄』에서 각종 扜軍들의 고가로 지출된 내역들만 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부지군을 제외한 募軍들의 고가는 대부분 일당으로 계산되었으며, 1인당 일당 0.25냥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양상이 확인된다. 반면, 부지고가는 고정된 일당으로 지불되지 않았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지불되었음을 볼 수 있다. ‘京 80리’를 운반한 경우 상대적으로 유독 많은 부지고가가 지불되었으며, 왕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두 배의 부지고가를 지불한 것을 볼 때, 부지고가는 물량과 거리에 따라 책정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叢書』 1 各塵記事 · 市民賸錄1, 여강출판사, 273-276면).

95) 위의 각주와 같음.

96) 『비변사등록』 숙종 36년 9월 19일.

97) 『비변사등록』 영조 5년 7월 12일.

98)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7월.

〈표 4〉『健陵改修謄錄』「水原府進排雜物價及匠募雇價所入成冊」 중 雇價 기록

(단위: 냥)

일반 募軍		인원수	일수	지불합계	1인 1일 고가
1805년	造作軍	2명	3일	1.50	0.25
	編結軍	2명		0.50	0.25
	假家材木運入 및 助役軍	5명		1.25	0.25
	守直軍 2명, 汲水軍 2명	4명	2일	2.00	0.25
	北心空石 700立, 兩頭折 및 結束軍	5명	2일		0.25
	結束軍	5명	2일	2.50	0.25
	各邑 空石 捧上時 募軍	2명	2일	1.00	0.25
	千里次 生葛大3甲, 織15巨里 및 加乃達 5巨里 紋作募軍	6명		1.50	0.25
	甲揮帳 30浮 鮮縫募軍	5명		1.25	0.25
	結束使喚軍	2명	5일	2.50	0.25
1807년	粗木 造釘軍	16명		4.00	0.25
	粗釘 4千箇 改造軍	5명		1.25	0.25
	編結軍	2명	5일	2.50	0.25
	生葛 3甲, 織 96巨里 編結軍	34명		8.50	0.25
	椽木 및 昱子竹 324개 去皮軍	1명	6일	2.50	0.25
	堅支木 裁折軍	2명		1.50	0.25
	甲揮帳 30浮 鮮縫軍	7명	2일	3.75	0.25
		1명	0.5일		
	各樣 雜物 積峙軍	6명		1.50	0.25
	北心空石 兩頭束軍	13명		3.25	0.25
	莎草假家 造作軍	40명		10.00	0.25
	莎草假家 入役軍	4명		0.80	0.20
	莎草櫛土 露根軍	6명		1.50	0.25
	漆匠	1명	0.5일	0.21	0.21
	各樣 雜物 積峙軍	6명		1.50	0.25
	北心空石 兩頭束軍	13명		3.25	0.25
	莎草假家 造作軍	40명		10.00	0.25
	莎草假家 入役軍	4명		0.80	0.20
	莎草櫛土 露根軍	6명		1.50	0.25
	守直軍 2명, 汲水軍 2명	4명	4일	4.80	0.30
	別編饋時軍	2명	0.5일	0.30	0.15
1805년	結所庫直	1명	33일	8.25	0.25
	結所 各樣 雜物 使喚軍	4명	12일	12.00	0.25
	부지군	인원수		지불합계	1인당 고가
	再次 粗釘 1000箇 負持軍	1명		0.30	0.30
	同 莎草 負持 京 80里	2명		1.20	0.60
	慕華館 看品 莎草 負持	2명		0.40	0.20
		11명		1.32	0.12
1807년	毀撤雜物 運置陵結所軍	9명		0.90	0.10
		2명		0.50	0.25
		39명		1.56	0.04
		25명		1.00	0.04

부지고가의 책정 기준은 19세기 후반 시전 자료에서 발견되는 부지고가들을 정리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면주전 조직의 운영 규정을 담고 있는 『瞻錄』에서는 受價와 관련한 항목들마다 관련 執吏, 庫直, 使喚, 色丘, 門直, 道家, 次知, 曹司 등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기재하면서 맨 마지막에 “木錢負持價”라는 지출 명목을 기재하였다.⁹⁹⁾ 이때 ‘錢木負持價’는 동전과 木을 짊어 옮기는 비용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進排에 대한 대가를 정부로부터 受價하는 것은 큰 물자가 오가는 일이었고, 受價의 과정에서 담당 관리들이나 면주전의 담당 임원층에게 지급되는 人情이나 例送 등에서도 많은 물자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에 다양한 물자를 운반하는 짐꾼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그 짐꾼들에 대한 품삯을 기본 부대비용으로 포함시켜놓았던 것이다.

면주전 『등록』에는 ‘錢木負持價’로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 금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관련 실무직들에게 例送하는 것은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負持價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受價의 액수가 매번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실무직에게 例送하는 것은 受價의 규모와 상관없이 受價 횟수마다 고정액이 지불되었던 반면, 負持價는 그 운송대상이 되는 受價 錢木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負持價가 지불되었던 기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표 5〉 『補弊所上用冊』 중 負持雇價의 上用 내역 (단위: 냥)

		上用 총액	부지고가	부지고가를 제외한 실제 운반 수량	운임 비율(%)
을축년(1865) 3월 5일	貸來還報次	8140.90	8.10	8132.80	약 0.1%
을축년(1865) 6월	貸來還報次	1901.90	1.90	1900.00	0.1%
을축년(1865) 12월 26일	本貸來文	360.36	0.36	360.00	0.1%
병인년(1866) 9월 6일		360.36	0.36	360.00	0.1%
(후략)					

99) 『瞻錄』(河合文庫) 「水紳受價」.

먼저, 『補弊所上用冊』에 나타나는 負持雇價의 上用 내역을 모아 <표 5>로 정리하였다. 보폐소는 貸來文(대출금)을 갚거나 移送할 때 負持雇價를 함께 지불하였다.¹⁰⁰⁾ 즉 보폐소는 물자를 옮길 때 짐꾼을 고용하였고 그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품삯은 항상 그 옮기는 대상이 되는 금액의 0.1% 수준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운임 비율은 『方物次知會計冊』에서 지출되었던 負持雇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方物次知所에서는 매번 제 용감 長房에 民魚價 명목으로 252냥을 보냈는데, 이때 항상 使喚에게 2냥, 負持에게 0.25냥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¹⁰¹⁾ 이때에도 252냥에 대한 負持의 품삯은 약 0.1% 수준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지고가의 비율은 유사한 시기 다른 시전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紙塵 회계장부의 하나로 보이는 『各項物目塵契』(1875)에서도 각종 물자를 가져가거나[持去] 가져오기[持來] 위해 짐꾼을 고용한 사례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¹⁰²⁾ 관련 지출 내역들 중에서도 운반된 물자의 액수가 명확하게 기재된 사례를 추출하여, 운반 액수 대비 고가의 비율을 <표 6>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다. 이때에도 부지고가는 운반 액수의 0.1%로 정률화되어 있었다.

<표 6> 『各項物目塵契』(1875) 1월 27일 紙塵이 각 지방 長房塵契에 지불한
금액과 운반비

(단위: 냥)

	① 元情	② 木邊 4조	③ 公事 條	④ 籌廳	⑤ 文書 直	⑥ 門 軍士	⑦ 甘結	⑧ 情錢 持去 雇	⑨ 情錢 (①~⑦) 합계	情錢 대비 雇價의 비율 (⑧÷⑨×100)*
嶺南長房契	96.00	85.84	15.40	1.00	1.00	0.20	0.10	0.20	199.54	0.1%
嶺南長房塵	48.00	42.92	7.70	1.00	1.00	0.20	0.10	0.10	100.92	0.1%
湖南長房契	96.00	88.09	15.81	1.00	1.00	0.20	0.10	0.21	202.20	0.1%
湖南長房塵	48.00	44.04	7.90	1.00	1.00	0.20	0.10	0.10	102.24	0.1%
湖西長房契	96.00	48.97	8.79	1.00	1.00	0.20	0.10	0.16	156.06	0.1%
湖西長房塵	48.00	24.48	4.39	1.00	1.00	0.20	0.10	0.08	79.17	0.1%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근사값이다.

100) 『補弊所上用冊』(河合文庫).

101) 『方物次知會計冊』(河合文庫).

102) 『各項物目塵契』(규장각 古4259-104).

이와 같이 부지고가가 운반하는 물자의 수량에 따라 정률적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운반과정에 실제로 들어간 노동력의 강도를 헤아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공전을 책정할 때 그 생산량과 기술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종래 일종의 의무적役으로서 행해질 때에는 부역일수가 정해져 있을 뿐 그 시일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운반하는지, 어느 정도의 노동강도로 일하였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부역제·요역제 대신 급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부역일수 즉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료 즉 월급이 계산되었다면, 이 또한 실제의 노동량과 노동강도를 고려한 대가 지불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생산량별·기술력별 정액화된 공전과 운반량에 따라 정률화된 부지고가는 실제의 노동량과 노동강도에 대해 가치평가를 한 대가 지불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량과 노동강도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평가는 당시 각각의 노동 분야에서 전업적 노동자 또는 노동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 본래 서울의 일반 방민이 역으로서 해당 노동을 수행하던 때와 달리 전업 조직이 이를 대신 전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해당 노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 책정은¹⁰³⁾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역의 代立에 대한 대가로 시작되었다가 각 노동집단의 전문성이 지속됨에 따라 각 노동분야별 고가 책정기준이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전도 물자를 운반할 때 내부의 자체 인력을 쓰기보다는 별도의 전업적 부지고군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후반 시전의 지출장부에서 부지고가가 꼬박꼬박 기록되어 있고 그 액수도 운반 물자 액수의 0.1%로 정률화되어 있었던 것에서, 시전의 부지군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주전 『등록』에서 진배 수가시 정례적 지출 사항들을 규정하

103) 물론 이때 '대가 책정'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하의 노동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이 각각 충분하고 서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책정된 '대가' 개념은 아니다. 또한 피고용자 집단과 고용주체 사이에 대가의 정당성(고용조건)에 대한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리라 전제하기도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18세기 후반부터 각 고가의 책정 기준이 노동량과 노동강도에 따라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면서 부지군고가를 매 항목마다 명시하였던 것을 통해 이것이 정식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應役軍의 고용과 시전 내 노동조직

이상에서 살펴본 수공업자에 대한 공전 지출과 물자 운반에 대한 부지고가의 지출은 시전의 취급 상품과 영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전에게는 한편으로 각자의 취급 상품과는 무관하게 시전으로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역도 있었다. 시전상인들은 市役으로서 國喪이나 山陵役 등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¹⁰⁴⁾ 17세기 중반 무렵에는 궁궐수리도배역도 시전상인의 부담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⁰⁵⁾ 시전을 有分塵과 無分塵으로 구분하고 유분전을 다시 十分役, 九分役, 三分役 등으로 나누는 것은¹⁰⁶⁾ 바로 이러한 국역에 대한 부담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전은 해당 국역을 어떻게 수행하였을까? 시전의 개별 구성원이 모두 직접 응역하였는지, 또는 일부 구성원만 동원되었는지, 또는 별도의 응역군을 고용하여 代立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역은 본래 시전상인들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요역제의 고립제화와 맞물려 시전의 국역 수행방식도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19세기 후반 시전상인들이 전문적인 도배군에게 雇價를 지급하여 대내수리도배역을 수행하였음이 드러났다.¹⁰⁷⁾ 또 19세기 말 면주전의 사례에서 시전에게 요구되었던 부역노동의 총량에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대체노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점차 대체노동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도 논증된 바 있다.¹⁰⁸⁾ 시전이 응역군을 고용한 분야, 雇價 지급 방식, 응역군 관리 등의 구체적 내용들은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104) 변광석, 2001 앞의 책.

105) 고동환, 2013 앞의 책, 343-344면.

106) 『만기요람』 재용편 5 各塵 有分各塵.

107) 고동환, 2013 앞의 책, 347면.

108) Owen Miller, 2007 앞의 논문, 148면.

시전의 응역군 고용 양상은 면주전 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1887년의 기록인 『諸各塵應軍節目』에서는 각 시전이 出軍雇役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移御할 때 修理軍, ② 각 殿, 宮, 幕次의 縫造軍, ③ 廟, 社, 殿, 宮, 능침 및 각처의 祭享, 床足軍, ④ 支勅 待令軍, ⑤ 方物 封署軍, ⑥ 檻函의 內塗軍, ⑦ 각처 窓戶軍이 포함되어 있다.¹⁰⁹⁾ 이때 이 모두는 '雇役之軍'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고용된 응역군의 구체상은 면주전 裨房의 몇몇 장부에서 나타난다. 면주전 裨房에서는 각 구성원이 해당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井間冊을 기록하였는데, 『軍井間冊』과 『奴軍輪回井間冊』이 그 예이다.¹¹⁰⁾ 대내수리 역이 있을 때마다 해당 別監에게 4냥씩 例給한¹¹¹⁾ 내용을 담고 있는 『大內修理謄錄冊』도 비방이 관리하던 장부였다. 또한 비방의 인준으로¹¹²⁾ 기록된 『軍防口冊』은 각 시기별, 응역군별 지불한 防口文의 액수와 해당 '防口人'의 명단을 기록하였다.¹¹³⁾

이때 防口文은 매번 "생식계에서 上用"한다고 하였다. 생식계는 면주전 裨房의 자금을 관리하던 계였다.¹¹⁴⁾ 생식계의 지출장부에 해당하는 『생식계상용책』에는 실제로 應役軍들 명목으로 防口文을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¹¹⁵⁾ <표 7>는

109) 『諸各塵應軍節目』(河合文庫).

110) 『軍井間冊』(河合文庫); 『奴軍輪回井間冊』(河合文庫).

111) 『大內修理謄錄冊』(河合文庫)에 기록된 금액은 '전각 수리도배 비용'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고동환, 2013 앞의 책, 347면). 그러나 해당 금액들은 中使別監과 世子宮別監에게 例給한 돈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例給'은 국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관청의 실무직 관리들에게 정례적으로 주는 선물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大內修理謄錄冊』에서 별감에게 例給된 금액을 실질적인 전각 수리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12) 비방 간부인 首席과 所任의 이름으로 인준되고 있으며, 장부 말미에 裨房의 수결이 되어 있다.

113) 『軍防口冊』(河合文庫).

114) 면주전 조합조직은 여타 시전처럼 간부진으로 구성된 大房 조직과 일반 조합원들로 구성된 裨房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동환, 2013 앞의 책). 대방과 비방 관할 아래에는 여러 契와 所들이 속해 있었는데, 그 중 대방 관할의 補用所는 대방의 자금 관리 조직이었고, 비방 관할의 生殖契는 비방의 자금 관리 조직이었다(김미성, 2017 앞의 논문, 61면).

115) 『生殖契上用冊』(河合文庫).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응역군의 종류별로 1인당 防口文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1인당 2~3전 규모로 나타나며, 산릉에 응역하는 경우에만 유독 그 액수가 컸다.

〈표 7〉『생식계상용책』에 기록된 應役軍에 대한 防口文 지출 내역

		1인당 防口文	배정 인원수	役處
床卓軍		2전	8명 내외	練主를 조성할 때 竹皮箱子
床足軍		2전	1~5명	祭禮
縫造軍		3전	8명 내외	殿의 遮帳幕
窓戶軍		2전	4~8명	祭禮 때 官房 · 祭官房 動駕 때 御齋室 殿, 衛將所 등의 각종 房
塗脩軍		2전	4~8명	祭禮 때 官房 · 祭官房 動駕 때 御齋室 · 移安廳 堂, 亭, 閣, 房 등의 수리 · 수보 때
산릉 (예외)	床足軍	1냥	2명 내외	山陵 大祭
	塗脩軍	1냥	12명 내외	山陵 假齋室 내 人居接處

그렇다면, 응역군 명목으로 지불된 防口文이 어떤 성격을 지닌 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防口의 문제는 貢市人이 일반적으로 겪는 폐단으로 문제시되었다. 外都庫貢契에서도 심각한 폐단의 하나로 '防口發賣'가 문제시 되었는데, 관속들의 중간수탈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위해, 즉 그들의 입을 막기[防口] 위해 목재를 發賣하거나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¹¹⁶⁾ 이외에도 下屬들의 防口나 豫下가 공인과 시전을 지탱하기 어렵게 하는 악습으로 언급되는 자료들이 발견된다.¹¹⁷⁾

116) 金東哲, 1986 「18·19세기 外都庫貢契의 성립과 그 조직」『韓國史研究』 55. 防口錢으로
발매한 목재의 대금은 시중 목재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이었다. 이에 관속들은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사서 이를 뇌팔아 그 이익금을 차지했던 것이다. 외도고 내의
軍次知나 江次知가 和應하여 발매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방
구발매의 폐단은 관속들과 외도고 계원과의 결탁 속에서 더욱 성행하였던 것으로 나타
난다.

117) 『비변사등록』 정조 5년 10월 18일: 현종 5년 2월 21일.

특히 시전의 응역군과 관련된 防口의 문제는 『各塵記事』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전기사』 중 무신년 8월의 기록에는 裨房軍의 防口를 금단하는 일이 담겨 있다.¹¹⁸⁾ 여기에서는 각 시전이 각 宮의 제향 때에 응역하는 상족군, 도배군, 지의군, 봉조군에 防口의 예를 행하는 폐단을 논하였다. 이때 防口는 이미 매우 오래된 관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防口의 폐단은 “매번 부역에 당하여서는 그 반을 넘치게 보고[濫報]”하였다거나, “虛軍으로 어지러이 보고[昌報]하는 지경”, 또는 “法例 외로 使役”하는 것이라거나, “違越하는 폐단” 등으로 표현되었다. 즉 防口 관련 내용의 초점은 시전들이 실제로 들어간 응역군 수보다 더 많은 부담을 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면주전 생식계가 응역군의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얼마씩 지출한 防口文의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다. 防口文은 해당 役의 부담자인 시전이 직접 응역하지 않는 대신 ‘입막음[防口]’조로 지불한 돈이었으리라 짐작된다.¹¹⁹⁾ 17세기 아래 각종 요역이 고립제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役 부담자는 役價 명목의 돈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고립군의 雇價를 지불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¹²⁰⁾ 이러한 가운데 본래 市役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시전 구성원들도 그들이 직접 응역하지 않을 경우, 그 役價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곧 防口文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각전기사』에 기록된 防口의 폐단은 시전으로부터 방구문을 더 많이 받아내려는 담당 관리들이 일으킨 문제였다. ‘虛軍’이란 실제로 응역하지 않는 인원인데 허위로 보고한 인원을 뜻하며, 虛軍을 거짓 보고하였던 까닭은 그 담당자가 시전으로부터 더 많은 방구문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虚軍으로 인해 보고된 응역군의 수와 실제로 일하는 응역군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응역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해당 役事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118) 『各塵記事』 「裨房軍防口禁斷事 本署謄錄 무신 8월」(1977 이문사 영인본, 322-324면).

119) Owen Miller도 방구문을 ‘commutation money’로 번역하였으며, 시전상인들에게 부여되었던 부역노동을 현금 지불방식으로 대체한 것으로 설명하였다(Owen Miller, 2007 앞의 논문, 146면).

120) 金東哲, 1988 앞의 논문.

防口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雇價와도 혼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생식계상용책』에서 나타나는 防口文은 각 응역군마다 1인당 일정한 액수로 계산되어 지출되었다. 또한 이 액수는 국가적 토목공사에 고용되었던 役軍의 일반적 雇價였던 하루 1인당 2~3전씩의 액수와도¹²¹⁾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防口의 명목이 19세기 후반에는 이미 실제 응역군의 실질적 雇價 속에 포함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된다. 1892년의 기록에서는 이미 시전의 응역을 代錢한 ‘防口’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¹²²⁾

이상의 내용을 통해, 면주전을 비롯한 시전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전문적인 雇軍을 고용하여 대신 응역을 하게 했던 사정과 그들의 인원수만큼 일정한 액수의 防口文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면주전은 여전히 해당 잡역에 대한 명목상의 의무부담자였으므로, 그 응역군을 관리하는 역할은 직접 담당하였다. 생식계의 수입장부에 해당하는¹²³⁾ 『生殖契上下冊』은 각종 罰錢의 납부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 각 관청의 塗脩軍들이 불성실한 응역으로 罰錢을 낸 경우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865년 5월 29일에는 의릉의 수리도배군이 不善舉行한 이유로 3냥의 벌전을 냈다.¹²⁴⁾ 1866년 1월 19일에는 의금부 도배군으로 全不顧見한 사람 2명이 각각 損徒罰로서 3냥씩을 냈고,¹²⁵⁾ 같은 해 2월 2일에는 종묘 도배군으로 全不顧見한 사람 3명이 각각 損徒罰로서 1.5냥씩을 냈다.¹²⁶⁾ 이때 不善舉行은 해당 役

121)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4월 29일; 정조 원년 3월 1일; 정조 6년 8월 7일; 정조 7년 11월 5일.

122) 1892년 각 시전의 시민들이 塗脩軍, 修理軍, 床足軍, 窓戶軍, 函內塗軍으로 응역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도배군 이외의 응역은 이미 모두 代錢이 허락되었는데, 討索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移御할 때의 수리군은 옛 규례대로 시행할 것과, 상족군은 옛 규례대로 2錢씩으로 防口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의정부와 고종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상족군과 창호군은 옛 규례대로 代錢을 시행하게 하고 그 이외의 침해는 없도록 하였다(『고종실록』 권29, 29년 12월 6일; 『비변사등록』 고종 29년 12월 6일).

123) 엄밀히 말하면, 면주전 비방에서 생식계에 보낸[上下] 내역을 담은 장부이다.

124) 『生殖契上下冊』(河合文庫), 을축년(1865) 5월 29일.

125) 『生殖契上下冊』(河合文庫), 병인년(1866) 1월 19일.

126) 『生殖契上下冊』(河合文庫), 병인년(1866) 2월 2일.

을 제대로 거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全不顧見은 해당 役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경우를 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면주전 비방 관할의 生殖契에 불성실한 應役軍의 별전이 납부되고 있었음을 볼 때, 면주전은 고용한 應役軍의 실제 應役 실태에 대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면주전은 그 개별구성원 각각이 직접 국역에 응하는 대신 별도의 응역군을 고용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防口文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응역군이 성실히 역을 수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벌금을 수납하며 명목상의 역 부담자로서 관리자 역할만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면주전 내 비방 조직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응역군과 관련 비방 관리가 비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면주전에서의 工錢 지출이 대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과 대조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주전에서 염공전, 도련공전의 지출이 이루어진 곳은 토주계, 수주계, 방물차지소 등이었다. 이를 계와 소는 모두 물종별 진배를 맡고 있는 조직들로서 모두 대방 관할하의 조직들이었다. 면주전 대방은 대정부거래에 해당하는 진배 업무나 조합조직의 운영에 치중하였고, 그 외의 보조적 업무는 비방에 맡겼으며, 실제의 일반 거래 영업 부문은 各房에 맡겼다.¹²⁷⁾ 이러한 시전 조직 내의 업무 분장 속에서 진배 품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산·가공과정의 공전은 대방 차원에서 관리되었고, 취급 물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조합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했던 국역 부문은 비방에서 관리되었던 것이다.

한편, 면주전은 그 산하에 별도의 노동조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주전 『등록』에서는 大牌와 三牌라는 노동전담조직이 등장한다. 면주전은 進香使 禮物을 호조에서 看品할 때 황색과 자색의 入染, 乾正, 汲水, 그리고 관련 대소사를 1牌와 2牌, 大牌 등이 거행하도록 하였다.¹²⁸⁾ 또 方物을 봉해서 포장[封裹]하는 날에도 ‘新舊挾兩牌’가 일제히 대령하도록 하였다.¹²⁹⁾ 면주전의 『방물차

127)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28) 『膳錄』(河合文庫) 「進香使禮物戶曹郎廳看品時人情」“黃紫入染之役, 及乾正等事, 一二牌一年式, 輪回責應, 而黃乾正, 則裨房全數舉行事。紫入染汲水與大小木桶所羅奴婢軍等事, 大牌舉行。”

129) 『膳錄』(河合文庫) 「進香使禮物戶曹郎廳看品時人情」“方物封裹之日, 三色新舊挾兩牌, 一

『지회계책』에서는 실제로 방물 봉과과정에서 “兩日次 牌가 종일 待令”하였으며, 총 7명의 牌人에게 각각 0.12냥씩 지급하거나 요기할 돈을 지급했던 내역도 확인된다.¹³⁰⁾ 이렇듯 진배의 과정에서 많은 일손이 필요한 염색, 봉과 등의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면주전 내에는 牌들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면주전 내 牌 조직들은 상시적인 조직이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大牌와 三牌에도 所任이라는 임원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分兒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¹³¹⁾ 면주전 자료 중 『外人收執冊』에는 실제로 각 패소임의 이름과 그들의 수결도 나타난다.¹³²⁾ 이때 각 패는 면주전 구성원들에게 자금을 私貸해주기도 하는 등 별도의 자금을 운영했던 정황도 확인된다.¹³³⁾

〈표 8〉 『등록』 중 「大牌三牌歲饌進呈大房」 관련 규정

		몫의 규정	몫의 비율
대행수	當牌	牌分兒平衿倍呈	2
	他牌	牌分兒平衿進呈	1
영좌	當牌	牌分兒平衿半進呈	1.5
	他牌	牌分兒平衿進呈	1
공원	當牌	牌分兒平衿半進呈	1.5
	他牌	牌分兒平衿進呈	1

大牌와 三牌는 면주전에 소속감을 가지고 일정한 의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주전의 『등록』에서는 매년 연말에 歲饌을 대방에 進呈하는 것에 대해 정리하면서 大牌와 三牌의 뜻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¹³⁴⁾ 그 내용은 〈표

齊待令, 于議政府封裹爲乎矣, 毋論五十座, 鮮事熟習之人, 封裹與套書割端看品, 各差備預定出令, 以爲舉行事.”

130) 『方物次知會計冊』(河合文庫) 「丙寅八月二十三日以十月十八日至會計」.

131) 『賸錄』(河合文庫) 「凡諸威儀禮錢初婚禮錢捧上各分兒」.

132) 『外人收執冊』(河合文庫).

133)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52면 참고.

134) 『賸錄』(河合文庫) 「大牌三牌歲饌進呈大房」.

8>과 같다. 각 임원마다 ‘當牌’와 ‘他牌’의 뜻이 다르게 규정된 것으로 볼 때, 大牌와 3牌는 각각 돌아가며 해당 임원에게 배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이들 牌가 국역에 관해서만 응역했던 것이 아니라 면주전 임원층의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규정은 해마다 대방 임원층에게 歲饌을 진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혹 각 牌가 遺物이 너무 적어서 歲饌을 分兒하는 일이 있지 않더라도, 대방에 歲儀하는 것을 빠트리는 것은 불가하다”고¹³⁵⁾ 할 만큼 엄격히 고정된 것이었다.

면주전 외의 다른 시전에서도 牌조직이 발견된다. 1802년의 眞絲塵 규정집에 해당하는 『진사전입의』에서도 “門外牌分은 매달 그믐날에 捧上한다”라고 하여¹³⁶⁾ 眞絲塵 산하에도 牌조직이 있었으며, 진사전에 정기적으로 稅를 납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사전의 牌조직은 ‘門外’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성 내에 있었던 진사전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875년 紙塵의 회계장부로 추정되는 『各項物目塵契』에서도 ‘牌任’과 ‘牌所任’이 확인된다. 지전은 평시서에 대령해야 하는 일이 있거나, 예단지나 방물지 등을 진배하는 과정에서 大房 간부, 次知, 募軍 등에게 식사비[食家]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대상에 牌所任이 포함되어 있었다.¹³⁷⁾ 이를 통해, 지전에서도 면주전처럼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에 牌 단위의 노동력을 동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에도 牌를 단위로 ‘應辦’이라는役을 수행하였다. 응판은 과거시험장에서 소용되는 물품과 경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공인들의 공통된 의무였다. 1753년(영조 29)에 마련된 「應辦改分定節目」에서는 응판역을 담당하는 조직 단위를 설정하면서, 4개의 契를 합하여 1牌를 만든다고 하였고, 4牌가 8主掌을 윤

135) 『賸錄』(河合文庫) 「大牌三牌歲饌進呈大房」.

136) 『眞絲塵立議』(국립중앙도서관).

137) 『各項物目塵契』(규장각 古4259-104) 11면 2월 10일 “同日, 飄海人弘濟院來到時, 平市署成冊, 例壹箋. 牌任一員, 食價貳箋.”; 12면 2월 20일 “二十日, 胡人飄風弘濟院, 來到待令牌任一員【自十一日, 以十八日至, 合八日, 每日食價二箋式】; 合壹兩陸箋.”; 22면 3월 22일 “同日分戶曹禮單紙坐起時, 大房四綱, 食價肆箋, (中략) 牌所任三員, 食價參箋, (후략)”; 22면 3월 23일 “二十三日, 禮單紙裁折時, 大房四綱, 食價肆箋, (중략) 牌所任一員, 食價壹箋.”; 23면 3월 24일 “同日, 方物紙坐起時, 大都家告祀, 文壹兩壹箋, (中략) 牌所任五員, 食價伍箋, (후략)”

회로 돋개[添助]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⁸⁾ 이때 牌는 군소 貢契들로 구성되었고, 主掌은 각 관청 소속의 貢人으로 구성되었다.¹³⁹⁾ 규모가 다른 貢契와 貢人的 부담을 공평하게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개의 貢契를 하나의 牌로 편성하여 主掌을 보조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처럼 시전이나 공인의 응역 조직단위로서 '牌'의 명칭은 꽤 일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牌 조직이 시전 산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전상인들이 국역 수행을 위해 직접 응역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동력의 영역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였던 사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시전이 내부 조직구성을 체계화하였던 과정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전이 조선후기 고용노동의 발생 및 조직화 양상과 연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시전의 노동력 고용 양상을 기술적(숙련) 수공업자와 비기술적(비숙련) 노동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수공업 및 요역 제의 변화와 고용노동의 발달 추세 속에서 工錢과 雇價의 책정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전의 상품 생산과정, 상품 운반과정, 국역 수행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수공업자가 役價가 아닌 工錢을 받게 된 것은,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처지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18세기 기술력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工錢이 책정된 것은 수공업 기술과 노동력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

138)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2월 4일.

139) 해당 절목에서는 貢과 契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貢의 명단에는 각 관청의 이름을 나열하였고, 契의 명단에는 각 공인계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 즉 貢은 각 관청에 직속되어 해당 관청에 필요한 물자 전반을 조달하였던 貢人們을, 契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특정 공물을 맡아 진배하였던 貢契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각 관청 소속의 貢人에 비해 각각의 군소 貢契는 맡은 공물의 규모가 적었을 것이며, 이에 응관의 역을 수행할 때에도 그 부담량에서 차이를 두었던 것이다.

을 의미한다. 이때 시전과 수공업자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종전까지 제조와 판매의 분리 원칙 아래 생산물의 판매를 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수공업자들이 18세기에는 별도의 시전이나 공인계를 창설하며 독자적인 판매권한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수공업자들이 신설한 시전이나 공인계가 기존 시전의 경쟁상대로 부상하며 형세가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시전과 수공업자의 관계는 공전을 매개로 하는 고용관계로 재편되었다. 시전은 수공업자에게 생산원료와 공전을 지급하고 그 생산·가공물을 납품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꾀하였다. 한편, 수공업자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근거로 여러 시전 또는 공인계에 납품하며 그 대가로서 공전을 지급받았다. 수공업자가 창설한 공인계의 경우 다른 시전으로부터 일부 생산·가공업무를 하청받기도 하였다. 수공업자가 지급받은 공전은 시전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액이나 완제품 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수공업자의 경제적 처지가 좋아졌다고만 보기기는 어렵다. 다만 공전의 책정을 통해 수공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구체화되고, 수공업 분야가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나갔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숙련노동 분야에서도 조선후기 役夫가 雇軍으로 대체되며 雇價도 일정하게 책정되기 시작하였고, 전문 노동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시전과 관련된 비숙련노동 분야는 물자를 운송하는 負持軍과 각종 국역을 수행하는 應役軍이었다. 해당 분야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이 형성되는 추세 속에서 시전도 이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전상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였다. 雇價의 지불 기준과 관리 방식도 체계화하였다. 19세기 후반의 기록에 따르면, 시전들은 負持雇軍에게 운반 물자의 0.1%에 해당하는 액수를 雇價로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정률제는 부지군의 노동 대가를 실제의 운반량, 운반거리에 따라 책정하기 시작했던 추세와 맞닿아 있다.

시전의 國役을 대신 수행하는 應役軍에 대해서는 防口文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였고, 불성실한 응역군에 대해서는 벌전을 받았다. 면주전 사례에서는 응역군을 補房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관련 비용 처리는 補房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던 生殖契에서 출납하였다. 또 시전은 진배과정에서 入染, 封裹 등의

큰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시전 산하에 牌 단위의 노동조직을 두기도 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모든 시전의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또 각 시기별 변화상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시전의 운영상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공, 물자의 운반, 국역의 수행 등의 각 영역을 서로 다른 전담자에게 맡겼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전이 조선후기 상업계의 변화, 수공업계의 변화, 노동업계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며, 그 내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영역별로 세분화·체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시전, 노동력 고용, 工錢, 防口文, 雇價

투고일(2018. 5. 1), 심사시작일(2018. 5. 16), 심사완료일(2018. 5. 30)

〈Abstract〉

Labor Employment and Wage Payments of Sijeon (市廛) in the Late Joseon Period

Kim, Misung *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that Sijeon had with artisans and laborers to secure the supply of goods, and to transport goods, while the commercial system was changing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lthough Sijeon, as the government-patronized market, had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Joseon government, Sijeon was also linked with the non-govern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This paper argues that Sijeon merchants employed artisans, laborers, and porters in several areas, and had their own standards of wages and prices.

First, this paper focuses on skilled labor. In the late 18th century, artisans' position toward Sijeon had evolved from a subordinate position into an independent and competitive one. Until the 18th century, artisans depended on the original Sijeon merchants to sell their products, and lost suits when the artisans competed against the original Sijeon. However, artisans began to establish new independent Sijeons, or Gongins, which guaranteed their rights of sale, and began to win their suits against Sijeon after the late 18th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payment for artisans also changed. The official artisa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made products through a sense of obligation or duty. Although the official artisans began to be paid a monthly salary, it was still under the concept of a reward for duty. However, in the 18th century, artisans' labor began to be valued by their technical skills or production results, even in governmental fields. With these changes, Sijeon also set unit wages called Gongjeon (工錢) for artisans autonomously, after receiving the costs from the government.

Second, this paper focuses on unskilled labor. In 17th century, the corvée system was

* Researcher,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changed due to the appearance of substitute laborers. In the transportation field, the professional porter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8th century. According to these changes, Sijeon members also began to depute their corvée labor to other agencies, and paid a cost called Banggumun (防口文) and imposed fines on unfaithful laborers. The wages and fines were set according to certain standards. There were also some affiliated labor organizations called 'Pae (牌)' under Sijeon to support hard works, such as dyeing, water delivering, and packing, in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 trade (進排, Jinbae). In the transportation area, Sijeon paid wages at a fixed rate for porters, 0.1% of the amount of delivered goods.

In conclusion, Sijeon systematized it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employing professional artisans, laborers, and porters to adapt to the changes in the handicraft economy and labor system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 Sijeon (市廛, licensed shops), labor employment, Gongjeon (工錢, cost for handiwork), Banggumun (防口文, commutation money), Goga (雇價, wages for labor)